

기안용지

분류번호 문서번호	도계 30320-100/	(전화: 731-6751)	사.행.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'91. 5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권길 도시계획국장 <i>김</i> 환경국장 <i>최</i>	협조기관	사무담당관 <i>김</i> 의정담당관 관리담당 <i>김</i>
기안책임자	노.경.찬	발신처	도시계획국 1991.6.1 사무담당관
경유 수신 참조	국안참조	발신처	도시계획국 1991.6.1 사무담당관
제목	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(기간연기)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		
제 1 단			
수신	내부결재		
제목	같은건		
<p>1. 우리시에서 '91.6 사업시행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중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반포, 압구정 아파트 지구내 아파트 지구 잔여지, 처티대지구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연및 완결확정축량이</p> <p>며 완료되어, '91.12.31까지 완결확정 처분의 인가가 불가역함으로 토지소유자및 여타 관계인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(관계서류의 공람)및 제14조(규약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)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</p>			

1991.6.1 도시계획국

(기간연기)인가에 따른 공방공고기입니다.

3. 사업계획(기간연기) 내용

계구명	시행면적	시행자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당초	연장	
영등지구	26,764,872.9㎡ 중 5,421,066.6㎡	서울특별시청	'68.1.18- '91.6.30	'68.1.18- '91.12.31	6개월연장

4. 공고내용

- 1) 공고종별 : 일간지 2차시 및 시보지
- 2) 소요예산 : 1,219,680원 (26,400원 x 3칸 x 7㎡ x 24 x 1.1)
- 3) 제출과목 : 계속지구, 영등토지, 사무관리, 수방비 및 수수료
- 4) 제출방법 : 공고우 청구에 의하여 지불. 공.

제 2 단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 공고 제 154호



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(기간연기)인가에 따른 공방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6호('68.1.18) 및 제8호('68.1.23), 제77호('71.8.

24)로 사업시행인가된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중 원지확장 계획 적용받은 면적,

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, 같은법 시행령 제

2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(기간연기) 인가로서 다음과 같이 공방공고 합니다.

2.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의한다.

2. 관공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된 토지소유자

관한영자 보이기, 행정처는 본 공고로 공표합니다.

1991. 6.

서울특별시

사업계획 변경(기간연기) 내용

구명	사업면적	사업자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당초	변경	
영등저구	26,764,872.8㎡중 5,421,066.6	서울특별시	'68.1.18-	'68.1.18-	6월 연장
			'91.6.30	'91.12.31	

끝.

제 3 안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같은안

1.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인 양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내 연포, 양구정

트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(사본)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(기간연기) 연기에 따른 공표

공고하였기 통보하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공고문(사본) 1부. 끝.

수신처 : 강남구청장(도시경비과장), 서초구청장(도시경비과장), 관계구청

제 4 안 69

수신 : 공보관

발신 : 도시계획과

70

제목 : 공고제 의제

1. 우편사업기 사업시행중인 영등포구환경기 사업시행규칙 검토, 압구정 역기
트 청구에 대하여, 별첨 공고문(사본)과 같이 사업규칙 변경(기간연기) 연기에 따른 공방
포기, 공고제에 의하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 8

가. 공고종별 : 일간지 2개사 및 사보

나. 공고내용 : 별첨 공고문(사본)

다. 공고표지출 : 공고우 청구에 의거 지출

첨부 : 공고문(사본) 3부. 끝.